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부록 제1442호 2024. 5. 7.(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710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72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73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740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6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742호(도시관리계획(연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42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748호(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사업인정에 관한 열람·공고) 44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752호(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47

회 람							
--------	--	--	--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공공기관 내 적극행정의 중요성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바, 이를 지원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연수구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현행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는 신규 위원회의 설치에 지양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따르면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조문의 정비를 통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제6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5. 20.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연수구청)
- 연락처 : 전화 032-749-7084, FAX 032-749-7070
- E-mail : white8319@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마.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구청장은 적극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 2분의 1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
2. 감사부서의 장 및 인사부서의 장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포상 등)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상의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범위와 지원기준을 구체화하여 점점 급증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범위 구체화(안 제2조)
-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기준 구체화(안 별표)
- 민원업무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1조 ~ 제7조, 제10조)
 - (기존) 민원업무공무원 등 다양한 지칭 ⇒ (변경) 민원 처리 담당자로 통일 적용
- 준말 사용(안 제4조, 제7조, 제10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1.(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1층 민원여권과
- 연 락 처 : 전화 749-7552 / FAX 749-7548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을 ““민원 처리 담당자”란 ”으로 하며, “접수·처리하는”을 “접수·처리하거나 주민을 응대 또는 안내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연수구”를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

제3조 중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으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한다.

제4조 중 “민원담당공무원”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민원담당공무원”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법령이나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담당공무원이”를 “민원 처리 담당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사업”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중 “민원담당공무원”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민원담당공무원은”을 “민원 처리 담당자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원 처리 담당자 등 지원 기준 (제6조제2항 관련)

지원 구분	지원 기준	비 고
1. 심리상담 및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직원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연계, 힐링 프로그램 연계
2. 의료비	30만원 범위 내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1시간 이내	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피해 당일 내 연장 가능(최대 4시간)
4. 법률상담 및 손해배상 소송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연수구</u> <u>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u> <u>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 지원과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u>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u>”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u>접수·처리하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 인천광역시 <u>연수구</u> 소속 공무원</p> <p style="margin-top: 20px;"><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 처리</u> <u>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 ----- ----- ----- <u>민원 처리 담당자의</u> ----- ----- -----.</p> <p>제2조(정의) -----“<u>민원</u> <u>처리 담당자</u>”란 ----- ----- ----- <u>접수·처리하거나</u> <u>주민을 응대 또는 안내하는</u> -- -----.</p> <p>1. ----- <u>연수구(이하 “구”</u> <u>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연</u> <u>수구의회</u> ----- --</p> <p>2. 「<u>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u> <u>근로자 관리 규정</u>」에 따른 <u>공무직근로자</u></p> <p>3. 「<u>인천광역시 연수구 기간제</u></p>
<p><u><신 설></u></p>	<p>3. 「<u>인천광역시 연수구 기간제</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2. (생략)</p> <p>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u>민원 업무담당공무원</u> 등(이하 “<u>민원 담당공무원</u>”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u>구청장</u>”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u>민원담당공무원</u>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u>마련하여야</u> 한다.</p> <p>제5조(<u>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u>) <u>민원담당공무원</u>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u>근로자 관리 규정</u>에 따른 <u>기간제근로자</u></p> <p>4. 「<u>청원경찰법</u>」에 따라 채용하는 <u>청원경찰</u></p> <p>5. (현행 제2호와 같음)</p> <p>제3조(적용 범위) ----- - <u>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u> -----<u>민원 처리 담당자</u>에----- ----- -----.</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 ----- ----- ----- <u>민원 처리 담당자</u> ----- ----- <u>마련해야</u> -----.</p> <p>제5조(<u>다른 조례와의 관계</u>) <u>민원 처리 담당자의</u> ----- ----- <u>조례</u>----- ----- -----.</p>
<p>제6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u>민원 담당공무원</u>이 민원업무를 처리</p>	<p>제6조(지원 사항) ① ---- <u>민원 처리 담당자가</u> -----</p>

현행	개정안
<p>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사업</u></p> <p><u><신설></u></p> <p>제7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u>민원담당공무원</u>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u>마련하여야</u> 한다.</p> <p>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u>민원담당공무원</u>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p> <p>제11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u>결정하여야</u> 한다.</p> <p>② (생략)</p>	<p>-----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u>사항</u></p> <p>② <u>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u></p> <p>제7조(안전시설 확충) ----- <u>민원 처리 담당자의</u> ----- ----- ----- <u>마련해야</u> ----- --.</p> <p>제10조(지원 신청) ----- ----- <u>민원 처리 담당자는</u> ----- ----- <u>제출해야</u> ----- ---</p> <p>제11조(지원 결정) ① ----- ----- ----- ----- <u>결정해야</u> -----.</p> <p>② (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내용을 일치시키고, 제안 참여자격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제안제도 운영 근거 변경 (안 제1조)
 - 채택제안 실행 공로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규정 명시 (안 제17조)

○ 제안 참여자격 확대

-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안 참여자격을 (기존) 구민·소속 공무원에서 (변경) 구 행정예 관심에 있는 자·소속 공무원으로 확대 (안 제2조)

○ 제안심사위원회 관련 사항 정비 (안 제5조)

-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조정 및 명확화
-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변경

○ 그밖의 사항

-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조문 조정, 한자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2층 자치행정과 (동춘동, 연수구청)
- 연락처 : 전화 032-749-7233, FAX 032-749-7219
- E-mail : jhcool77@korea.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 첨부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 제도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을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으로, “제안제도”를 “제안 제도”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을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예 관심이 있는 자와”로, ““공무원”이”를 ““제안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으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주의환기·진정·비판”을 “주의환기, 진정, 비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구민과 공무원은”을 “제안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민·공무원은”을 “제안자는”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반려”를 “종결처리”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급금액”을 “지급금액 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부구청장”을 “제안 업무 담당 국장”으로,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5급이상”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5급 이상”으로, “제안제도”를 “제안 제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을 “위촉 위원”으로 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구분 및 자체우수제안 여부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부서가 작성한 성과평가에 대한 심사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로, “개회하고,”를 “개회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의원”을 “해당 위원”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 제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제안제도”를 “제안 제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을 “위촉 위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심사함에 있어”를 “심사할 때”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재심을”을 “재심사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예정시기”를 “예정 시기”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수구”를 “구”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노력상 등”을 “노력상”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2항 중 “· 「정부표창규정」”을 “,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신하고,”를 “대신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른”으로, “공적심사 위원회”를 “공적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 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자”를 “제안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택된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채택제안의”를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 및”으로, “부서”를 “부서

및 공무원 제안자”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시상·부상 또는 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의 단서”로, “사람에게는”을 “제안자에게는”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행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제2항 중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택제안이 채택결정”을 “채택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 중 “제안이”를 “채택제안이”로, “제안의”를 “채택제안의”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실시성과의 평가)”를 “(실시 성과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은”으로, “예산절감 등의 성과에 대하여”를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및 구 세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성”을 “실시 성”으로, “구청장이”를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기간 내에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 면)

⑨ 개요	
⑩ 현황 및 문제점	
⑪ 개선방안 (개선내용)	
⑫ 기대효과 (개선성과)	
붙임자료 :	

작성 방법
<p>① 제안종류 : 제안의 종류를 판단해 ✓ 표시 합니다.</p> <p>② 제안제목 :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하여 작성합니다.</p> <p>③ 제출기관 : 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명을 적습니다.</p> <p>④ 동일·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p>⑤ 주제안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p>⑥ 공동제안자 :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p> <p>⑦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 표시합니다.</p> <p>⑧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p> <p>⑨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합니다.</p> <p>⑩ 현황과 문제점 : 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p> <p>⑪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p> <p>⑫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p>

210mm×297mm[보존용지 70g/m²]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 라. (생략)

마. 단순한 주의환기 · 진정 ·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 사. (생략)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생략)

<신설>

-----.

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 주의환기, 진정, 비판 -----

바. · 사.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4.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 · 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구민·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4조(제안의 접수 및 보완) ① ~ ④ (생략)

⑤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

-----.

② ----- 제안자는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제안의 접수 및 보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종결처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업무를 총 괄한다.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 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제도 운영업무 주무 관으로 한다.

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 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 성하여야 한다.

④ 위촉 위원-----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 개최하며 --

-----.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 제도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⑨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
다.

제7조(제안평가단의 구성) 제안제

도를 활성화하고 참여를 장려하
기 위하여 구민, 학생,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제안평가단을 구
성하여 제안의 심사과정에 참여
하게 하고, 제안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위원회의 최종심사에 반
영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의견조회 등) 구청장은 제

안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
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⑨ -----

----- 해당 위원-----
-----.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원장-----
--.

제7조(제안평가단의 구성) 제안

제도-----

-----.

제8조(수당 등) ① 위촉 위원----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조회 등) -----

--- 심사할 때 -----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의 보완·개선) 구청장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재심
사를 -----.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예정 시기-----
-----.

제13조(제안의 보완·개선) -----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또는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2. (생략)

제15조(채택제안의 시상 및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시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상대상자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사로 대신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구 -----

-----.

1. 2. (현행과 같음)

제15조(채택제안의 시상 및 등급)

① ----- 노력상----- .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② -----

-----, 「정부 표창 규정」 -----
-----.

③ ----- 대신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른 ----- 공적심사위원회-----.

④ -----

③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7조(인사상 특전) (생략)

<신설>

제18조(관리기간) ① (생략)

②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

③ 제15조제1항의 단서-----

----- 제안자에게는 -----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인사상 특전)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행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관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채택 결정 -----

니한다.

③ 채택제안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실시의 권고) 구청장은 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구청장이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절감 등의 성과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 설>

-----.

<삭 제>

제20조(실시의 권고) ----- 채택제안이 -----

----- 채택제안의 -----
-----.

제21조(실시 성과의 평가) ① 구청장은 -----
-----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및 구 세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

② ----- 실시 성-----

----- 규칙으로 -----.

③ 관리기간 내에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개정이유

- 장애차별적 용어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법령 등 근거 규정이 없는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에 관한 사항 정비(폐지)하여 국민편의 도모

2. 주요내용

- 심신장애 표현 삭제(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서 인감증명서 삭제(안 별지 제9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2.(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안전관리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4층 안전관리과
- 연 락 처 : 전화 749-8861 / FAX 749-884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질병, 심신장애”를 각각 “질병”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요양 [] , 장애 [] , 장제 []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해임·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의결을 거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p> <p>1. 사망, <u>질병</u>, <u>심신장애</u>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p> <p>2. ~ 4. (생략)</p> <p>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 및 동 대표와 협의하여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사망, <u>질병</u>, <u>심신장애</u>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p> <p>2. ~ 4. (생략)</p>	<p>제6조(해임·해촉) ① ----- ----- ----- -----.</p> <p>1. --- <u>질병</u> ----- ----- ---</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u>질병</u> ----- ----- ---</p> <p>2. ~ 4. (현행과 같음)</p>

도시관리계획(연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연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749-86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 5. 7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연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29번지 일원
- 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폐지)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연수1동 529번지	232.1	감)232.1	-	'06.8.7.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폐지 - 위치 : 연수동 529번지 - 면적 : 232.1㎡	○ 함박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인 함박마을 상생교류소 건립을 위해 도시 계획시설 폐지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필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	20	2,783.8 → 3,014.9 (중 232.1)	연수동	529-1	232.2	-	-	
			연수동	529-2	232.1	-	-	
			연수동	529-3	232.7	-	-	
			연수동	529-4	232.6	-	-	
			연수동	529-5	232.1	-	-	
			연수동	529-6	232.2	-	-	
			연수동	529-7	232.1	-	-	
			연수동	529-8	232.2	-	-	
			연수동	529-9	232.1	-	-	
			연수동	529-10	231.8	-	-	
			연수동	529-11	230.8	-	-	
			연수동	529-12	463.0	-	-	529와 획지합병
			연수동	529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 의견제출: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 749-8652)

4.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사업인정에 관한 열람·공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7일

연 수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2개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업전체 연장 64.934km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비노선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10층(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비노선주식회사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2024. 5. 7. ~2024. 5.20(14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4. 5. 7. ~ 2024. 5. 22.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비노선주식회사(☎032-710-3590),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032-749-8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토지세목조사

소재지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지하심도(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m~()m까지		비고
					수용	사용(구분지상권)	임시사용	주소	성명				
연수구 선학동	1	28-83	전	226.0		108.9		서울 중랑구 상봉동 *****	공**	53.63m	38.62m	~ 59.52m	터널
연수구 선학동	2	28-80	전	306.0		219.1		서울 중랑구 상봉동 *****	공**	53.06m	38.67m	~ 59.57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28-83	전	226.0		108.9		서울 중랑구 상봉동 *****	공**	53.63m	38.62m	~ 59.52m	터널
연수구 선학동	2	28-80	전	306.0		219.1		서울 중랑구 상봉동 *****	공**	53.06m	38.67m	~ 59.57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28-56	전	1,372.0		233.9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동 ***호 (반포동, 반포아파트)	공**	48.82m	39.97m	~ 60.87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28-56	전	1,372.0		233.9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동 ***호 (반포동, 반포아파트)	공**	48.82m	39.97m	~ 60.87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28-83	전	226.0		108.9		서울 중랑구 상봉동 *****	공**	53.63m	38.62m	~ 59.52m	터널
연수구 선학동	2	28-80	전	306.0		219.1		서울 중랑구 상봉동 *****	공**	53.06m	38.67m	~ 59.57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28-83	전	226.0		108.9		서울 중랑구 상봉동 *****	공**	53.63m	38.62m	~ 59.52m	터널
연수구 선학동	2	28-80	전	306.0		219.1		서울 중랑구 상봉동 *****	공**	53.06m	38.67m	~ 59.57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28-83	전	226.0		108.9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	공**	53.63m	38.62m	~ 59.52m	터널
연수구 선학동	2	28-80	전	306.0		219.1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	공**	53.06m	38.67m	~ 59.57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28-56	전	1,372.0		233.9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동 ***호 (반포동, 반포아파트)	공**	48.82m	39.97m	~ 60.87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4	임	4,557.0		353.0		서울 미포구 성산동 *** 시영아파트 **동 ***호	권**	92.34m	40.93m	~ 61.83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7-1	임	28,463.0		57.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 (만수동, 햇빛마을백산아파트)	김**	104.05m	41.10m	~ 62.00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4	임	4,557.0		353.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나루로***번길 ***, 나동 ***호 (화익동, 대인파크빌)	김**	92.34m	40.93m	~ 61.83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5	임	298.0		57.0		인천 부평구 청천동 *** 금호타운 ***동 ***호	김**	92.34m	40.93m	~ 61.83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7-1	임	28,463.0		57.0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	김**	104.05m	41.10m	~ 62.00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556-4	대	259.5		98.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번길 **, **동 ****호 (송도동, 송도글로벌컴퍼스쿠르지오)	김**	52.80m	42.92m	~ 63.67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28-54	답	2,992.0		15.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길 **, **동 ***호 (잠원동, 신반포청구아파트)	김**	52.59m	38.76m	~ 59.66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신4-6	임	3,174.0		70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경기빌라 *동 ***호	김**	126.31m	44.32m	~ 65.07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28-64	전	1,653.0		453.9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	김**	51.59m	39.07m	~ 59.97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28-54	답	2,992.0		15.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 **동 ****호 (북대동, 신영지웰시티·차아파트)	김**	52.59m	38.76m	~ 59.66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신4-2	임	1,983.0		385.0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삼익아파트 *동 ***호	김**	97.59m	43.85m	~ 64.60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28-54	답	2,992.0		15.4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	김**	52.59m	38.76m	~ 59.66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신4-3	임	1,983.0		253.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 화성아파트 *****	김**	115.06m	44.09m	~ 64.84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신4-3	임	1,983.0		253.0		인천 서구 가정동 ***	김**				
연수구 선학동	1	28-83	전	226.0		108.9		서울 중랑구 상봉동 *****	김**	53.63m	38.62m	~ 59.52m	터널
연수구 선학동	2	28-80	전	306.0		219.1		서울 중랑구 상봉동 *****	김**	53.06m	38.67m	~ 59.57m	터널
연수구 동촌동	1	224-9	전	869.0	334.0	535.0		인천 남구 용현동 ***** 한양아파트 *동 ***호	김**				환기구#3
연수구 동촌동	2	224	대	405.0		405.0		인천 남구 용현동 ***** 한양아파트 *동 ***호	김**				환기구#3
연수구 동촌동	3	855-7	전	144.0	109.0	35.0		인천광역시 남구 낙성중로 **, **동***호(용현동, 한양아파트)	김**				환기구#3
연수구 선학동	1	신34	임	4,557.0		353.0		인천 남구 용현동 *** 세한아파트 가동 ***호	김**	92.34m	40.93m	~ 61.83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7-1	임	28,463.0		57.0		호주 캐피탈 테리토리 다우너 레인플레이스 ** 우원번호 ****	김**	104.05m	41.10m	~ 62.00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6	임	3,868.0		1,905.0		인천 연수구 연수동 *** 동남아파트 ***동 ***호	김**	95.96m	40.98m	~ 61.88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556-2	대	237.6		27.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대*****	53.18m	42.96m	~ 63.71m	터널
연수구 송도동	1	8-1	대	52,038.0		1.1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	롯데*****	57.38m	19.44m	~ 49.60m	인천대
연수구 선학동	1	신37-1	임	28,463.0		57.0		인천 남동구 구월동 **** 동아아파트 *동 ****호	박**	104.05m	41.10m	~ 62.00m	터널
연수구 선학동	2	신37-1	임	28,463.0		57.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동 ***호 (구월동, 동아아파트)	박**	104.05m	41.10m	~ 62.00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7-1	임	28,463.0		5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 (성수동*가)	박**	104.05m	41.10m	~ 62.00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28-65	전	1,761.0		251.1		인천시 남구 관교동 ***	박**	50.81m	39.31m	~ 60.21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28-78	전	1,872.0		157.8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세골길 ***** , **동 ***호 (크로바빌)	백**	52.47m	38.79m	~ 59.69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신4-17	임	198.0		6.0		인천 남동구 만수동 ***** 그린다세대주택 **	송**				
연수구 청학동	1	신4-17	임	198.0		6.0		인천 중구 무의동 *****	송**				
연수구 청학동	1	신4-17	임	198.0		6.0		인천 남구 학익동 *****	송**				
연수구 청학동	1	신4-17	임	198.0		6.0		인천 연수구 청학동 *** 대림맨션 *****	송**				
연수구 청학동	1	신4-17	임	198.0		6.0		인천 중구 답동 *****	송**	103.57m	43.92m	~ 64.67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7-1	임	28,463.0		57.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동 ***호 (만수동, 주공아파트)	신**	104.05m	41.10m	~ 62.00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7-1	임	28,463.0		57.0		경기도 평택시 이촌로**번길 **, **동 ***호 (이촌동, 정암아울드타운)	신**	104.05m	41.10m	~ 62.00m	터널

편입토지세목조사

소재지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소유자		지하심도(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m~()m까지		비고
					수용	사용(구분지상권)	임시사용	주소	성명				
연수구 선학동	1	신37-1	임	28,463.0		57.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호 (만수동, 우정아파트)	신**	104.05m	41.10m ~ 62.00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신4-16	임	198.0		81.0		인천 남구 도화동 ****	양**	104.45m	43.93m ~ 64.68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556-3	대	320.6		254.3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동 ***호 (용현동, 신창아파트)	오**	53.24m	42.97m ~ 63.72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4	임	4,557.0		353.0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번길 ***, ***동 ***호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오**	92.34m	40.93m ~ 61.83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6	임	3,868.0		1,905.0		인천 남구 옥련동 ****	원**	95.96m	40.98m ~ 61.88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7-1	임	28,463.0		57.0		인천 연수구 연수동 ****	유**	104.05m	41.10m ~ 62.00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171-16	도	1,040.0		246.0		인천 남구 문학동 ***	유**	85.59m	40.49m ~ 61.39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28-77	전	2,325.0		10.0		천안시 광덕면 태덕리 ***	유*	52.40m	38.82m ~ 59.72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7-3	임	3,273.0		1.0		동구 송림동 ***	이**	90.24m	40.91m ~ 61.81m	터널	
연수구 동춘동	1	913-6	잡	32,555.0	1,236.0	74.0	1,854.0	인천 남구 도화동 ****	이*****			환기구#2	
연수구 선학동	1	28-65	전	1,761.0		25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	이**	50.81m	39.31m ~ 60.21m	터널	
연수구 선학동	2	28-63	전	2,092.0		573.7		부산시 남구 광안동 ****	이**	49.50m	39.78m ~ 60.68m	터널	
연수구 연수동	1	신58	임	20,330.0		987.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익아파트 씨동 ***호	이**	157.32m	44.71m ~ 65.46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556-3	대	320.6		254.3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동 ***호 (용현동, 신창아파트)	이**	53.24m	42.97m ~ 63.72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28-65	전	1,761.0		251.1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 승진파인빌 ***호	이**	50.81m	39.31m ~ 60.21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28-63	전	2,092.0		573.7		부산시 남구 광안동 ****	이**	49.50m	39.78m ~ 60.68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28-8	임	487.0		137.0		인천 남구 문학동 **	이**	89.89m	40.90m ~ 61.80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신4-9	임	694.0		254.0		신포동 **	이**	126.31m	44.32m ~ 65.07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28-65	전	1,761.0		251.1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삼로리 *** 켈리마을 대동파인체앙크르아파트 *****	이**	50.81m	39.31m ~ 60.21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28-63	전	2,092.0		573.7		부산시 남구 광안동 ****	이**	49.50m	39.78m ~ 60.68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4	임	4,557.0		353.0		인천 서구 공촌동 **** 경남아파트 *****	이**	92.34m	40.93m ~ 61.83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556-3	대	320.6		254.3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동 ***호 (용현동, 신창아파트)	이**	53.24m	42.97m ~ 63.72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7-2	임	7,438.0		183.0		인천시 남구 송역동 ***	이**	106.41m	41.16m ~ 62.06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4	임	4,557.0		353.0		인천 서구 신원동 **** 효성아파트 ***동 ***호	이**	92.34m	40.93m ~ 61.83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4	임	4,557.0		35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곡중앙로***번길 **** (논현동)	이**	92.34m	40.93m ~ 61.83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28-79	답	434.0		153.5		인천 연수구 선학동 ***	이**	52.75m	38.72m ~ 59.62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신5-19	임	1,190.0		84.0		인천시 남구 옥련동 **	이**	92.62m	43.78m ~ 64.53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7-1	임	28,463.0		57.0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예핑 예덴서거리* 우편번호 ****	이**	104.05m	41.10m ~ 62.00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신4-3	임	1,983.0		25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대역동로 ****, ***동 ***호 (휘경동, 아문휘경 지엘 에스테이트)	장**				
연수구 선학동	11	28-24	답	1,162.0		28.0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	창**	1.00m	107.65m ~ 109.12m	지하수배출관로	
연수구 선학동	1	신36	임	3,868.0		1,905.0		인천시 남구 용현동 ***	창**	95.96m	40.98m ~ 61.88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556-5	대	299.6		189.5		인천 남구 학익동 *** 신동아아파트 **동 ***호	창**	52.60m	42.89m ~ 63.64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신5-17	임	298.0		6.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삼환아파트 ***동 ***호	조**	73.81m	43.58m ~ 64.33m	터널	
연수구 청학동	2	신4-7	임	992.0		23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삼환아파트 ***동 ***호	조**	133.63m	44.39m ~ 65.14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28-57	전	1,650.0		18.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간석동)	조**	48.63m	40.07m ~ 60.97m	터널	
연수구 선학동	2	28-62	전	404.0		19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번길 ** (간석동)	조**	48.45m	40.19m ~ 61.09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신4-4	임	892.0		243.0		인천시 중구 내동 **	조**	111.78m	44.02m ~ 64.77m	터널	
연수구 동춘동	1	911-10	잡	16,531.0		36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 (서소문동)	주*****	70.87m	14.48m ~ 35.15m	터널	
연수구 송도동	1	10-1	대	6,355.9	32.7	323.0	256.0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 (송도동)	주*****	57.20m	19.61m ~ 49.77m	인천대	
연수구 청학동	1	신4-5	임	694.0		309.0		인천시 중구 신포동 *	차**	107.10m	43.95m ~ 64.70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7-1	임	28,463.0		57.0		울산광역시 남구 모수로***번길 (옥동)	최**	104.05m	41.10m ~ 62.00m	터널	
연수구 선학동	1	신34	임	4,557.0		353.0		인천 남구 주안동 ****	최**	92.34m	40.93m ~ 61.83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신4-25	임	397.0		146.0		인천 연수구 동춘동 *** 현대아파트 ***동 ***호	최**	130.58m	44.36m ~ 65.11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신4-24	임	397.0		31.0		인천시 중구 북성동 *가 *	최**				
연수구 선학동	1	28-33	전	632.0		16.0		인천 남구 문학동 ****	최**	1.00m	107.65m ~ 109.12m	지하수배출관로	
연수구 선학동	2	28-27	전	1,501.0		36.0		인천 남구 문학동 ****	최**	1.00m	107.65m ~ 109.12m	지하수배출관로	
연수구 연수동	1	신56-4	임	7,814.0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호 서초 동아타워 ***호	홍**	98.33m	43.86m ~ 64.61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신4-24	임	397.0		3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길 **, ***호 (서교동, 예랑빌)	황**	136.07m	44.42m ~ 65.17m	터널	
연수구 청학동	1	554-4	대	714.0		132.0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추홀대로***번길 *	맥***	53.93m	43.05m ~ 63.80m	터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024. 5. 7.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업시행지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94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사업명칭: 연수동 594번지 일원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 4,639.4㎡ (변경없음)
 - 건축면적 : 924.838㎡ (변경없음)

○ 연 면 적

- 15,521.097㎡ (건폐율 19.934%, 용적률 76.985%) (변경없음)

○ 용 도

- (기정)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업무시설, 판매시설

- (변경)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제조업소), 업무시설, 판매시설

※ 층별 용도계획 변경

○ 주차대수

- (기정) 348대 - 지하3층~지상1층 240대, 철골주차장 108대

- (변경) 348대 - 지하3층~지상1층 228대, 철골주차장 120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사업자명 : 주식회사 와이제이양지(YJ)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60번길 15, 2층 201호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붙임」 참조

7.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 기간 : 2024. 5. 7. ~ 2024. 5. 21.

○ 열람 장소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749-8652)

8. 관계서류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갖추어 둠)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연수동	594	주차장	4,639.4	4,639.4	주식회사 와이제이 양지(YJ)	인천광역시 서구 청 라커널로 260번길 15, 2층 201호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신탁	